

# 화재나 수재등으로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간 1,000~1,400mm 정도의 비가 내리며, 이중 50~6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한다.

이렇듯 1년 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즌이다 보니 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비에 의한 재산적·물질적 피해가 빈번하며 그 피해금액도 큰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재나 혹은 기타의 재해로 인해 기업들이 재산적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게 된 경우 일정정도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건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이유와 재해의 범위

재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재·수재·지진·화산·폭발·냉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방화·화재·실화·붕괴·교통사고·인위적 폭발 등의 산업재해와 인재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정상적 운영과정에서도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산업재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고가의 첨단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도 막대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다수의 회사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재산적 타격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해로 인한 재산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건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등에 의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재해가 아닌 임의사유(즉, 노사쟁의 파괴 등)로 인해 20%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해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의 규모가 총자산의 20% 미만이라면 역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손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이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소유자산 중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기업에게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재산 상실비율은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재산가액이 상실되기 전의 총자산(토지가액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상실된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자산의 가액과 상실후의 가액은 모두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세무서 결정일의 현재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 재해손실공제의 내용

재해로 인해 총자산의 20% 이상의 손실을 받은 기업은 재해 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율을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해 총자산의 35%를 상실한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의미한다(개인사업자의 재해손실공제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임).

여기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법인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여 향후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될 법인세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세를 뜻한다.

또한 미납된 세액이란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고지된 법인세 중 미납된 세액과 법인의 자진신고절차에 따른 법인세 신고금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말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

재해로 인한 손실을 입은 기업이 재해손실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미납된 세액은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미경과법인세는 신고기한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고기한이 1월 미만이면 1월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